#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261

발의연월일: 2022. 9. 6.

발 의 자:김희곤·강기윤·구자근

박대수 · 서일준 · 이인선

전봉민 · 정우택 · 하영제

한기호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후원방문판매는 다단계판매와 유사하나 본인의 후원수당이 본인 및 직하위판매원의 매출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판매형태로서 다단계 판매와는 다른 형태임. 이는 2012년 법적 제도로 도입된 이래 현재 약 70만명의 판매원들이 종사하는 등 서민들의 주요 생계수단의 하나로 자리 잡았음.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후원방문판매원들이 비대면 영업을 하지 못하여 심각한 매출 감소에 따른 생계의 위협에 직면하였으며, 코로나19 이후 더욱 가속화된 디지털 거래 시장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는 전자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전자거래에 의한 판매가 다단계 판매까지 허용된 반면, 후원방문판매는 직접 대면방문을 필수적 요소 로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용어상 "방문"이 포함됨으로 인하여 전자 거래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유일한 판매 형태로 방치되었기 때문임. 이에 개정안은 후원방문판매의 방법으로 "방문"이외에 전자거래에 의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디지털 경제의 발전 상황에 적응 하고, 비대면 거래의 확산에 따른 변화를 수용하고자 하는 것임.

한편, 이 경우 후원방문판매가 다단계 판매처럼 무분별하게 확장될수 있다는 지적이 있고, 불측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절한 보완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자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이버물의 개설·운영 주체를 본사로 단일화하고, 전자거래 판매는 소비자에 대한 판매로 하며, 다단계판매에 적용되는 행위규제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체결 의무화 규정과 후원수당 지급총액 제한 규정 및 판매재화 가격 제한 규정을 모두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안전한 거래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7호 및 제29조제2항).

#### 법률 제 호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전단 중 "제1호"를 "제1호(재화등을 생산하는 후원방문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재화등의 주된 공급자가개설·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9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에 대해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후원방문판매"란 <u>제1호</u> 및	7 <u>제1호(재화</u>
제5호의 요건에 해당하되, 대	등을 생산하는 후원방문판매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
특정 판매원의 구매·판매 등	가 판매하는 재화등의 주된
의 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	공급자가 개설·운영하는 사이
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	버몰에서 「전자문서 및 전자
을 미치는 후원수당 지급방식	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을 가진 경우를 말한다. 이	따른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소
경우 제1호의 방문판매 및 제	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를 포
5호의 다단계판매에는 해당하	<u> 함한다)</u>
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8. ~ 13. (생 략)	8. ~ 13. (현행과 같음)
제29조(후원방문판매업자의 의무)	제29조(후원방문판매업자의 의무)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제3항에도 불구하고 후원방	②
문판매업자가 후원방문판매원	
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100분의	
70 이상을 판매원이 아닌 소비	
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 20조제3항, 제23조제1항제8호· 제9호 및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 <u>다만, 전자거래의 방법</u> 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 매에 대해 해당 규정을 적용한 <u>다.</u>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